

[별첨 3] 위기관리장학금 시행세칙 변경(안)

■심리정서안정 위기관리장학금

1. 목적

심리정서적 위기관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서, 외부기관의 심리평거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정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

2. 장학생의 자격

- 1) 심층적인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- 2) 학생상담센터에서 5회 이상 상담을 받은 학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

3. 선발방법

- 1) 심층적인 심리평거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상담사의 추천으로 선발하며,
- 2) 상담사의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은, 학생상담위원회 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.

4. 지원 금액

- 1) 외부상담기관에 상담 및 심리평가를 받는 학생 : 30만원 내외
- 2) 정신과에 내방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학생: 20만원 내외
- 3) 위기관리 장학금 지원 금액은 학생상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재학 중 1인당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는다.

5. 장학금 수혜기간

- 1) 학기 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하다.

6. 증빙자료

- 1) 처음 외부상담기관에 방문하는 학생: 관련 영수증, 의사 소견서(혹은 심리평가보고서), 통장사본
- 2) 이미 약물치료 중인 학생: 의사의 소견서, 통장사본
- 3) 학과장, 상담사 추천서 및 위원회 회의자료

7. 지급 방법

증빙자료를 본교 학생상담센터로 제출 후 장학생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며, 담당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한다.

■가계위기 극복 위기관리장학금

1. 목적

당해 학기 재학생 중 가계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.

2. 장학생의 자격

가계 곤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이 곤란한 학생으로, 지도교수 상담 후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.

3. 선발방법

1) 2학의 학생중 6항 1)의 증빙자료를 갖춘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 면담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학생상담센터에 제출.

2)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대상 학생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'소위원회'를 구성하여 대상 학생의 적합성 심의.

※ '소위원회'의 구성은 학생상담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학생복지처장 및 장학위원회 위원 1인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.

3) '소위원회'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학생복지처로 자료 이관 후 학생복지처에서 장학금 지급.

4. 지원 금액

1) 학기당 50만원 이하로 최대 2개 학기까지로 지원할 수 있음.

※ '소위원회'의 심의를 통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금의 증액 가능. (단, 재학기간 중 200만원 한도)

3) 장학금은 당해 연도 '위기관리 장학금'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.(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)

5. 장학금의 반환

1) 장학금을 수혜받은 당해 학기에 휴학 또는 자퇴 발생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.

2) 면담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장학금 전액을 환수.(장학금의 환수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)

6. 증빙자료

1) 위기 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가계대출증명서,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, 파산증명서, 가족 입·퇴원 증명서, 소득분위 증명서 등 가계 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
2) 통장사본

3) 학과장 및 상담사 추천서(면담서)

7. 지급 방법

장학금 지급은 대상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.